

< 녹 취 전 문 >

과제명	2019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구술자명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면담자	신동호 ¹⁾	면담장소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로고스 회의실
면담일시	2019. 10. 24. 14:00	회차	1회차

1. 근황 및 성장 배경

면담자: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2019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님의 1차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퇴임하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분들의 과거 재판 경험과 헌법 철학을 생생한 음성과 동영상으로 담아 헌법재판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 구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술 일시는 2019년 10월 24일 오후 두 시, 구술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도심공항타워빌딩 14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고스 회의실입니다. 면담자는 아카이브웍스 책임연구원 신동호입니다. 소장님, 2006년 9월에 퇴임을 하셨는데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퇴임 후 관심을 쏟는 일이나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술자: 네, 지금 “로고스”에서 변호사 일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내가 막 나왔을 때, 몇 군데 대학에서 석좌교수로 초빙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고, 또 사외이사로 같이 일하자고 한 곳도 있었지만 저는 다 사양하고 오로지 변호사로서만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로고스”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면담자: 예, 고향이 전북 순창이시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유년기와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의 일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특별한 기억이 있을 것은 없는데, 제가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라고 하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있는 조그마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인가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된 뒤에 우리 집이 전남 광주로 이사를 했고, 그래서 저도 서석국민학교로 전학을 해서, 서중학교, 광주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자: 그러면 유년 시절 기억은 광주에서의 기억이 제일 많겠네요?

구술자: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의 기억이 있지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내가 이러 이러한 일을 했다가 이것이 하고 싶었다든가 하고 얘기할 만한

1) 배석한 헌법재판소 김혜영 심판제도과장은 면담자2로 표기함.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지요.

면담자: 소장님 집안 배경이나 가족 관련한 소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좋고, 여러 가지 유명한 집안이라서 (웃음) 혹시 그와 관련해서 좀...

구술자: 글썄 뭘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 환경이라면 조부모, 부모, 우리 7남매 대가족이 한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벽적벽적했지요, 집도 크고, 우리가 부자였어요. 부자로 잘살았어. 할아버지는 한문 하시는 유학자들한테서 존경을 받고 사셨고, 아버지는 증견 기업인으로서 활동하고, 우리들의 교육 같은 것은 전부 다 할아버지가 다... 아침에 기상을 빨리해라, 집 안 청소해라, 공부해라, 뭐 이런 귀찮은 일은 전부 다 할아버지가 해서 무서워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무섭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할아버지와 안 만나려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생활했었습니다.

면담자: 소장님은 그러면 형제분 중에...

구술자: 장남.

면담자: 장남이시고.

구술자: 나도 할아버지가 무서웠고 그랬는데 법과대학 4학년 다닐 때, 시험 준비 막판에 피치를 올리려고 한 학기를 휴학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우리 집에 내려와서 좀 떨어진 조용한 데 가서 공부를 한 학기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광주 우리 집에서 한 10여 킬로(km) 떨어진 조그마한 산인데, 거기에 옛날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을 했던 고경명(高敬命) 선생이라고, 호남 의병대장 고경명 선생, 그 선생의 재각이야 거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재각에, 호남 유림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그 총책임자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거기 산지기한테 얘기해서 내가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나면, 지금도 우리 동생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무서운 할아버지로만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때는 1950년도 후반기니까 시내버스고 뭐고 아주 불편할 때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나를 격려해 준다고. 양동이 같은 데에다 김치를 담아 가지고 들고 이렇게 오셔서 나를 격려하고 가셨어. 거기서 나는 몽클해 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소통이 됐어. 그래서 다정하게 잘 지냈어.

면담자: 나중에 고시 되고 나서 할아버지께서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구술자: 아유, 말할 것이 없지요.

면담자: 그런데 고시는 그때 행정과하고 사법과 양과를 다 합격해서...

구술자: 네, 양과를 한 번에 다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양과를 하려면 과목이 좀 면제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덜 했어요.

면담자: 양과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구술자: 왜, 진로도 사법과를 가면 사법부로 가서 법관이나 검사를 해야 되고, 행정과를 합격해서 가면 행정 부처의 사무관, 군수 이렇게 관직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 다르지요. 그러나 수험 과목은 비슷하니까 두 개를 한 번에 준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면담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관 생활할 때도 행정과 합격 경력이 반영이 됩니까?

구술자: 아니요, 그거는 별개니까.

면담자: 법정국장 하시고 그럴 때 좀 도움은?

구술자: 별로 도움 없어요, 과목이 몇 개가 면제가 돼요. 그런 혜택이 있어서, 대개 두 군대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담자: 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었고, 할 때 어떤 각오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우리가 대학을 진학할 때에 말이지요, 대학을 진학할 적에 지금처럼 두드러진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히 갈 데가 없어요. 법과대학이야, 가는 게. 그리고 법과대학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만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법과대학에 도전해 볼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법과대학을 갔지요. 법과대학을 가면 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공부해서 합격했지요.

면담자: 합격하시고 졸업하자마자 군 법무관으로.

구술자: 군 법무관으로 왔습니다.

2. 법관 시절 기억에 남는 판결

면담자: (군 법무관) 마치고 1963년도에 판사로 임관하셨나요? 그래서 법원에는 1994년 대법관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법관 재직 시기가 정치적 격변기였고, 우리 현대

사의 변화무쌍할 때였는데 여러 가지 격량이라든가 내부적인 고초나, 개인적인 고민 이런 것도 많았을 텐데 법관 생활을 회고할 때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구술자: 그런데 나는 참 행운아 같은 그런 일생을 지냈어요. 그 험난했던 법관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큰 위기가 나한테 닥쳐오지는 않았었어요. 그것이 나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군사독재라고 그럴까? 박정희 정권 있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전두환 대통령, 이런 상황이 되어 오니까 이 체제에 반대를 해서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구속되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많이 구속되고 그래서 법원이 좀 어려웠어요. 법원이 어려웠는데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무난하게 잘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면담자: 법관 생활하시면서 보람된 일이라든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구술자: 자랑할 거야 뭐 있겠습니까?

면담자: 보람을 느낀 일은?

구술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디서 얘기하려고 생각했나면, 무슨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느냐” 이런 문항이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할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내가 형사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는데, “왜 내가 형사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을까?”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왜 저 사람이 형사법원 부장판사를 가지?”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짐작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가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형사법원에 가면 데모하는 학생들 판결해야 하고, 또 간첩이라고 기소한 사람들 판결해야 하고, 이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사건들이 잘 처리되어야 하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갔지?”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의문은 나중에 내가 현재 소장을 하면서 “아 대법원장이 그래서 나를 형사법원 부장으로 보냈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 몇 십 년이 지난 뒤에. 왜 나를 형사법원 부장으로 보냈지? 그 어려운 데, 반공법 위반, 보안법 위반, 내란죄, 집시법 위반,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와서 재판하는 데를 왜 나를 보냈을까, 그 수수께끼를 못 풀고 있다가 나중에야 그 대법원장이 돌아가신 뒤에 빈소에 내가 갔다 오면서 “아 이 양반이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이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여기 문항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을...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면담자: 예. 바로 그다음 질문이 그거니까요 하시면 됩니다.

구술자: 84년도에(74년도에) 내가 형사법원 부장판사를 하고 있을 적에 간첩죄로 기소된 재일 동포 언론인이 하나 있었어요. 강씨인데.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그리고 관세법 위반, 밀수했다고, 이런 죄목으로 왔는데 그런 사건들은 경찰이나 검찰, 일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안기부(당시 중앙정부보)에서 해요. 안기부에서 하고, 재판도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입회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면, 재일동포니까 한국을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YS를 만나. YS가 김영삼 대통령을 말해요, YS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YS가 쓴 책도 일본말로 번역도 하고, 이런 정치하고 연관된 행위도 하면서 한국을 들락날락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론인 턱이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건을 담당했는데 우리가 무죄를 했어요. 밀수할 때, 일본서 올 때 물건을 관세 안 물고 통관했다는 그런 것 가지고 가벼운 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끄러웠지요. 그러나 그렇게 끝났지요. 끝나고 세월이 지난 뒤에 어떤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얼굴 좀 봅시다.” “왜요?” 그랬더니 “그 강씨 사건을 자기가 지금 맡았다.” 그런데 왜 맡았느냐면 “고등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우리가 무죄한 것이 전부 다 뒤집어져서 무기징역을 받아서 이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하는데 자기한테 와서 상고 사건을 맡아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 얼굴 좀 보러 왔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간첩을 무죄로 했는가?” “아니, 증거가 모자라고 간첩이 아니니까 무죄로 했는데 그 무슨 말씀이요?”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말고 나서는 그 사건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대법관이 되고 나서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을 했는데 일본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런데 그 편지 속에는 두 통이 들어 있는데, 한 통은 내가 대법관에 임명될 때에 기사를 보고 축하한다는, 참말로 반갑다고 그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의 재판을 쪽 쓴 거야. 자기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운판사가 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파기가 되었다, 똑같은 결론이 났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와서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받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죄가 되어서 내가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당신이 대법관이 되었던라, 얼마나 반가운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반송되었어. 그래서 6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퇴임했다는 기사를 보고 또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두 통이 나한테 왔어요. 그 사람 사건이 그렇게 해서 끝났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편지에다 뭐를 썼냐면 “한국 사법부가 살았다”, 물론 나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지,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할 때 특별히 머릿속에 남는 사건은 그 사건이라는 말이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심리할 때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결론을 내려서 무죄를 할 때도,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무죄를 한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했고, 그런데 그 뒤로 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그 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하니까 특별한 마음이 있지요, 그 판결이.

면담자: 74년도에 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구술자: 그때 얘기예요. 그때 형사법원에서 한 일이야.

면담자: 그때가 한창 유산...

구술자: 바로 그때예요.

면담자: 긴급조치, 엄혹한 시절이었지요.

구술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편지에다가 칭찬일색이야. “한국의 사법부가 잘한다.” 그다음에 이 사건하고 또 관련돼서는, 내가 대법관으로 퇴임해서 변호사 6년을 하고, 현재 소장 임명이 임박했던 말이에요. 막 하마평이 나오는데 내가 딱 지명이 되었어요. 나는 6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재조에서 나온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변호사만 오래 한 사람 중에서는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나 현재 소장을 임명 않는 그런,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하고 있는데 아 느닷없이 지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준비를 하는데, 나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내가 잘 아는 변호사 국회의원이 “당신 자랑거리 있으면 하나 주시오. 내가 청문위원들한테 알려서 도움을 좀 드리겠소.”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전부, 1심, 2심, 대법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 고등법원 판결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내가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면담자: 아까 대법원장께서 어떻게 형사부장으로 임명을 하셨는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다고 하셨는데.

구술자: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설문에는 없는데, 이렇게 탄 길로 흘러도 괜찮아요?

면담자: 아, 예.

구술자: 대법원장이 오셔서 목표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서울과 지방의 법률 문화의 교류, 이거를 내세웠어요, 정책으로. 왜 그랬냐면 서울에 발령받은 사람은 서울에서 평생 하고, 지방에 발령받은 사람은 서울로 오고 싶다고 해도 안 올려 주어요. 그러니까 지방 판사, 서울 판사가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경향 간의 법조 문화의 교류다, 이걸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서울서 근무한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고, 지방에서 근무한 사람을 서울로 올려 주고, 이러한 교환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면 전부 사표 내고 나가요. “이 월급 가지고는 두 집 살림을 못 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변호사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제1기 사표 내고, 2기가 또 사표 내고, 3기들도 사표 내고, 인사할 때마다 사표를 다 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때가 됐어요. 그런데 나보고 우리 지방법원 원장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너 이번에 해당이 되는데 갈래, 사표 낼래?” “나 갈라요. 나는 변호사를 해서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또 평생 법관으로 살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갈랍니다.” 그러면 “마음 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양반이 대법원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너 어디 희망하나? 희망지를 말해라” 그래서 내가 서울서 가장 가까운 데가 대전인데, “대전 갈랍니다” 그래서 대전을 가서 1년 근무하고 올라왔는데, 그때의 대법원장 마음이 내 추측(하)기에 “아 고맙다. 다들 사표 내고 나갔는데 내 정책에 호응해서 가 준다고 하니 너 참 고맙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인사 발령을 내가 받을 때가 되니까 “너 가거라, 형사법원에 가거라”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짐작을 했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내가 갔는데 문상 가서 문득 떠올라. “아 이 양반이, 민복기 대법원장께서, 아 이 양반이 그랬구나” 그때의 그 생각, 자기 정책에 잘 순응해 줬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를 형사법원 부장을 시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일 겁니다. 특별히 그분이 나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발군의 실력자도 아니고,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면담자: 그러니까 소장님은 거의 서울에서 주로 계셨네요.

구술자: 대전에서 1년 근무했어요, 이때에. “대전에 가서 1년만 근무하고 오너라” 그러셔서 “알았습니다” 하고 딱 1년 뒤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발령 나 가지고.

면담자: 소장님의 평가랄까요, 이걸 보면 “단순히 법조문 해석에만 매달리지 않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사법적극주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주된 평가가 이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술자: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웃음)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이 그렇게 추켜세웠구면, 나를.

면담자: 그리고 평소 소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건 내용을 체화해야 판결할 수 있다”, “법률의 해석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평가하고도 맥락이 닿는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술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하면 너무 과하게 했구면. (웃음)

면담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법관 초기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한상 의원 테러범 조작사건.

구술자: 그런 사건 있었지요.

면담자: 그게 초기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사건을 맡으셨다고.

구술자: 아, 내가?

면담자: 그 판결 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구술자: 아, 내가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것이 부정확한 것 같은데요. 박한상 씨 테러범 사건?

면담자: 그렇지요. 테러범 조작 사건.

구술자: 나는... 꼭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뽑아 놓은 것이. 그거는 예전에 보도.

면담자: 보도에 보면 그때 일선 판사.

구술자: 몇 년도지요?

면담자: 이게 65년도.

구술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65년도면 내가 배석판사 할 때인데, 예. 좋게 써 주려고 이런저런 것을 갖다 붙여놓은 모양입니다.²⁾

면담자: 중간중간 보면 상당히 주목을 받는 판결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구술자: 우리는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 어려운 사건, 중요 사건들을 했겠지.

면담자: 그런 사건을 판단하고 이럴 때 어떤 철학, 소신, 그때 특별히 어떤 염두에 두고 계셨던 그런 기준이라든가 철학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그 사건을 당해서 철학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평소 생각한 대로 판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3.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과 보람

2) 정확하개는 1966년임.

1966년 9월 26일 서울형사지법 윤영철 판사 단독심으로 열린 박한상 의원 테러범 조작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종로경찰서 형사 유제인(35) 등 6명 전원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동아일보 1966년 9월 26일)

면담자: 200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직하시고 6년이 지난 뒤에 제3기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때 임명된 배경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구술자: 2000년 9월 대법관으로 퇴임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할 때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났어요. 더 있었으면 좋겠구나, 대법원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나왔지요. 한 사람도 유임된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법관들이 퇴임할 적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유임을 시켜요, 말하자면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때는 딱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좀 남았으면, 또 남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안 됐어요. 안 되어서 변호사를 하면서도 혹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재조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변호사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현재 소장 (임명) 당시에는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6년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틀렸다, 이제 너무 오래되었다 해서 마음을 접었는데 전혀 예상외로 청와대,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전화. 그때 핸드폰 전화가 귀할 때예요, 자동차에다가 장착시켜 가지고 다닐 때. 청와대 법무 비서관실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내정이 되었고 내일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지. 그때는 이미 내가 마음을 접었을 때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면담자: 대법원장 후보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구술자: 대법원장 후보에도 올라갔었지요.

면담자: 그렇게 연락을 받으시고.

구술자: 연락받고 내일 발표할 때까지, 대통령 결재 나서 발표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입 딱 다물고 있었지요.

면담자: 통보를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구술자: 통보를 받았을 때에 어떻다니? (웃음)

면담자: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생각을 하고 정리한 게 있었습니까?

구술자: 아, 그렇지 않았지요. 헌법재판소에 와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했더라도 무슨 헌법학 책을 읽어보고 그럴 생각은 없었지요. 다 연속된 것이다, 이렇게.

면담자: 헌법재판소를 얘기할 때마다 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이 늘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포함해서 3기 재판부의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구술자: 우리 3기 재판부에서는 법원에 있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나중에는 여성 법조인, 말하자면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해야 할지, 더 광범위한 다양성을 가져야 하는데, 좁은 의미의 법조인들끼리 모여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조금 더 다양화가 되는 것이 헌재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3기 재판부부터 청문회와 국회 정쟁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에다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비롯한 국민 여론에 의해 헌법재판소 구성이나 운영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물론 최근에도 국민 여론이나 정치적 측면이 사법기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술자: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뭐라고 내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재판부가 구성이 되었고 거기서 일을 하면 다 신뢰를 하고, 기다리고, 따르고 그래야지 어떤 압력을 넣는다든가 여론을 형성해서 판결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대규모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압박이 항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술자: 그런 압박은 존재하지만 그것 가지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사람들은 모르지요. 외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담자: 퇴임 시기에 불거진 전효숙 4기 소장 후보 지명 철회 사태가...

구술자: 그 문제는 내가 잘 몰라요. 그 문제는 내가 나온 뒤의 일이고, 내가 나온 뒤에 공방이 많이 생기고, 전효숙 재판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가 몰라요.

면담자: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제3기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재판이나 사법행정에서 역점을 두어 강조하거나 추진하였던 계획이나 구상이나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사업으로서는 그때 우리가 뭐를 했을까? 청사가 좁아 가지고 이거를 늘려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인원도 늘어나고, 사건도 늘어나고, 그래서 기구도 확장이 되고, 특히 그때는 도서관이 말이지요, 책이 짝 차 가지고 그 하중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청사를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또 부지도 없었어요. 지금은 강당 입구 쪽에다가 증축을 했지요?

면담자2: 네, 증축 공사 중입니다.

구술자: 공사 중이지요? 그 계획도 우리가 세웠었는데 그때, 너무 협소한 곳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 해 놓으면 또 다시 증축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못 했을 뿐만이 아니라 돈이 없어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주어서. 그래서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뜻대로 이루지 못했지요.

면담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초기부터 의전 서열 문제가 좀 있었었지요? 소장님께서 퇴임 하시던 해에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불참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술자: 그런데 그게 신년인사회 맞습니까? 틀림없어요?

면담자2: 네, 저희 국장님께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구술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국가 의전 서열을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과 같다, 대법원장의 예에 의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 소장 이 세 직위가 동렬인데, 다 시정이 되었어요. 국회 제헌절 같은 행사에 가면 딱 그렇게 섭니다. 국회의장은 주관자고, 대법원장, 헌재 소장, 국무총리 이렇게 서요. 그런데 언제 한 번 갔더니 한명숙 씨가 총리인데, 이 양반이 옆에 서 있어, 내 옆에. 그러니까 끌어당겼지, 이리로 오라고. 그런데 다만 언론에서는 자꾸 국무총리를 앞에 내요, 기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었고, 청와대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의전 서열을 국무총리 뒤로 미루어요. 언제 그러냐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청와대에서 만찬이 있어요, 삼부 요인. 거기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내외간에 참석해서 밥을 먹는데 거기 가면 국무총리가 헌재소장보다도 윗 서열에 앉아요. 나는 알지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 누가 위이고 아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통령 앉으시고 국회의장 앉고 대법원장 앉고 국무총리 앉고... 그 누가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알지. 아 저 사람이 내가 저기 가야 하는데 총리가 앉아 있구나 하니까 불만이 조금 있고, 대통령 초청 만찬 장소에서 의전이 틀렸고, 외국 원수가 오면 환영연을 해요. 거기 가면 또 국무총리 밑으로 하고. 외국 원수 접견할 때도 국무총리를 앞에 세우고 헌재 소장을 뒤로 세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신년하례회. 이 세 가지가 다 청와대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꼭 헌재 소장을 국무총리 밑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

시정하기 위해서 총무처³⁾에다 대고 좀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총무처에서는 그것을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시는 직속상관이 국무총리이니까. 그것을 안 들어주고, 자기들이 말하는 “의전통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세우면서 안 들어줘요. 청와대 비서실에다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잘 먹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 그런 데 안 갈란다” 그래 가지고 보이콧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시정이 되었어요. 시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언론에서는 총리를 앞세우게 적는 경우가 더러 보입니다.

면담자: 그거는 언론에서 하는 거니까...

구술자: 그런데 그것이 무슨 별것은 아니고 좀 쩌쩌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면담자: 1999년 베니스 위원회의 옵서버(observer)로 가입한 이후 체코, 헝가리 재판소장 초청으로 동구권의 헌법재판제도를 연구 시찰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 그리스, 루마니아 등 구주 지역의 헌법재판제도의 연구 시찰,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방문 및 베니스 위원회 총회 참석, 유럽 3개국 헌법재판소 방문, 터키 헌법재판소장 일행 초청, 유럽 인권재판소장 일행 초청, 체코 헌법재판소장 일행 초청,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장 일행 초청 등 헌법재판 및 법치주의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 2006년 6월 베니스 위원회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과 국제협력을 위한 소장님의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그런데 이 헌법재판제도가 구라파(유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임을 자주 해요. 무슨 10주년 기념행사다, 창립 기념행사다, 그래서 한국에 헌법재판소가 생겨 활발하게 움직인단다 해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가면 스피치(speech)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2001년도에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설 10주년 기념행사에 갔어요. 내 차례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48년도 건국할 때에 헌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헌법재판을 시작했다, 역사가 60년이 넘는다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이 헌법재판제도는 오지리(오스트리아)의 한스 켈젠(Hans Kelsen)이라는 학자가 주장해서 생긴 것이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잘 알지도 못하는 동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무슨 역사가 80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헌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고 조금 어정쩡한 중간 형태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확립된 헌법재판제도인지는 몰라도 좌우간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을 그때부터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

3) 1998년 2월 28일부터 행정자치부(지금의 행정안전부)로 통합됨.

4) 정확하게는 53년. 이하 같음.

라고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무슨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가 헌법재판의 역사가 제일 길고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위상을 높이려면 물론 재판을 잘해야 하지요. 물론 재판을 잘 해야 하지만, 이런 일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국제적인 무슨 회합이나 활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베니스위원회에도 처음에는 옵서버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옵서버가 둘이 나가요, 헌재에서 한 사람 나가고 법무부에서 한 사람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법무부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법무부가 빠지고 우리가 정식 멤버가 되면서 이공헌 재판관이 거기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헌재가 베니스위원회의 회원국이 되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회의도 한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지요.

면담자: 1999년도에 옵서버로 참여를 했다가.

구술자: 그거는 그때 법무부 측에서.

면담자: 그런데 단기간에 정회원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었습니까?

구술자: 정회원으로 승격이 된 것은 내가 나오기 바로 전, 2006년 초, 2005년 말, 그 무렵에 그랬어요. 그동안에 옵서버로 계속 다녔어요, 우리가.

면담자: 제3기 재판소를 얘기할 때에, 보통 1, 2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 낸 정착기 헌법재판소라면 3기 재판소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낸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3기 재판부를 이끄셨는데, 3기 재판부의 특별한 점, 그 전과 달라진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술자: 헌법재판이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기 때는 사건이 거의 없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헌법소원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그거를 헌재로 가지고 오자, 그것도 큰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첫째는 홍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지요. 그러나 헌재가 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해 나가니까 국민들이 신뢰하고 이제 사건이 늘어났고, 우리 3기는 1, 2기의 덕을 많이 봤지요.

면담자: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탄핵 사건 때 처음으로 TV로 공개를 하셨지요?

구술자: 그랬습니다.

면담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라든가 영향력, 이런 게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일부 조사에 의하면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기관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가 되었습니다. TV 생중계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장애 요인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구술자: 별 그런 장애를 느끼지는 못 했어요. 장애를 느끼지는 못했는데, 재판의 공개는, 현재의 탄핵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도 마찬가지고 미국 법원도 마찬가지고, 구라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장단점을 가지고 토론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해서 해 왔지요, 현재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났을 때, 그때 미국 방송국도 왔고, 중국 방송국도 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중계하지 못하게 한다면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판관 회의에서 그렇게 하자, 공개하자, 그랬지요. 무슨 법에 딱 공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없으니까.

면담자: 그러면 재판관들 중에.

구술자: 반대 없었어요.

면담자: 반대 없었습니까?

구술자: 재판관들이 이 사건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을 했지만 텔레비전 중계 이 문제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까 현재의 역할이라고 그럴까? 그 의전 서열 문제라든가 재판소 건물 신축의 문제라든가, 또 베니스위원회 문제, 이것 말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말할 기회가 없어서 못 했는데, 현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88년도? 그렇지요? 지금 의전 서열로 보면 대통령 다음의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의전 서열인데 공관이 없어, 공관이. 그래서 그 공관 문제를 가지고 초임 현재의 소장과 현재 사무처장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관사를 얻었어요. 내가 내정이 되고 내일 임명장 수여식이 있는 날, 전임 소장, 김용준 소장을 만났어, 그런데 김용준 소장이 나한테 세 가지를 당부를 해, 그중의 하나가 “공관 뺏기지 마라.” 공관을 달라고 청와대에서, YS가 안가를 전부 없애 버리고 난 후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관이 청와대하고 딱 담장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좌지가 좋아,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경치가 좋고 뒤에 산이 있고 벚꽃이 만발하고 이런 좋은 장소니까 경호실에서 “안가로 쓸 테니까 청와대로 내보라. 우리가 건축비 예산을 확보해서 주마, 너희들 예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말아라,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건물하고 교환하자.” 이렇게 꾸준히 해 오는데, 2기 소장님은 “우리가 재판관 회의 부처 봤더니, 재판관 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니까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호실에서 물러났다가 한참 있다가 또 와서는 “야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건물을 주고 예산을 얼마를

주고” 이렇게 자꾸 교환을 요구해서 자기는 “핑계를 재판관 회의에 댔다, 잘 연구해 가지고 방안을 잘 해라” 그것이 나한테 부탁한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내가 가깝게 지낸 분이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대비를 하고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를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경호실장이 따라와. 따라와 가지고 “내일 제가 사무실에 좀 인사를 갈랍니다”, “아하 이 사람이 지금 공관 문제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보시오 오늘 임명장 받았는데 인사 다녀야 할 것 아니겠소? 현충원에도 가야 되고 국회의장도 방문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 시간이 있소?” “그러면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갈 수 없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협실로 들어갔어. 협실로 들어가서 그 얘기가, “안가를 없애버린 통에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다. 청와대 공관에서는, 청와대 내에서는 한가롭게 설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쉬면 좋고, 마침 여기는 청와대하고 밀착되어 있고, 시내로 나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적합하니까 해 주시오.” 이 사람이 길게 얘기를 해요, “아 실장 가만있으라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해 줄 수가 없다, 내가 현재에서 분위기를 들었는데 이 공관을 당신들 주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공관을 받아도 우리 현재로서는 만족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지 마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벉벉해 가지고 차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아이 딱 대 놓고 “아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재판관 회의에 상정도 안 할랍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 사람을 놔두고 명명히 나와 놓고 내 속으로 “야 내가 너무 간 큰 짓을 했는가” 조금 불안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때가 9월 15일, 우리가 9월 15일 날 임명장을 받았는데,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야,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어요, 비행기 뜨고 막 이런 행사가 있는데,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모시고 여기로 왔어요. 나도 거기 갔지, 여기 옆에 앉아 있고 그러는데 “경호실장, 미안해요. 나로서는 어쩔 수 없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미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요새 다리 쪽 뺏고 잡니다. 이것이 미결이 아니고 기결이 되어 버려서 이제 불가한 일이라고 딱 해 버리니까 팔다리 쪽 펴고 잠 잘 잡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6년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대통령이 외부에 사적으로 출입할 때에 정문으로 못 나가고 후문으로 나가야 되면 현재 공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차도를 널 테니까 그것만 양해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거기 차도가 났어요. 그런데 4기 재판부 들어서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6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4기 재판부 처장이 와 가지고 그때의 경위를 물어 보길래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지금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가 싶어,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그래서 좋은 공관을 갖게 되었지요.

4. 제3기 재판부의 주요 결정

면담자: 네. 그다음에 3기 재판부의 주요 결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선 3기 재판부는 중전의 재판부를 통한 기본권 보장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리고 침례하게 대

립하는 정치적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이런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3기 재판부의 결정들의 특징이랄까.

구술자: 글썄요, 우리 3기 재판부가 두드러지게 좋은 판결을 했다 이렇게 할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다면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잘 했소” 할 수 있습니까? (웃음)

면담자: 특히 큰 사건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구술자: 그런데 지금은 더 큰 사건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탄핵 같은 재판이 큰 재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재판도 아니잖아요, 수도 이전 같은 문제.

면담자: 3기 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혹시 그거는 좀 아쉽다, 미흡했다라든가 그런 좀...

구술자: 별로 그런 건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면담자: 소장님의 판결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재임 기간 동안 903건의 전원재판부 결정에 참여를 하셨고, 이 가운데 95% 사건에서 법정의견에 가담을 하셨습니다. 전체 903건 중에서 약 23%의 사건에서는 위헌, 그다음에 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이런 사법적극주의적, 아까 말한 그런 판결 성향을 보이셨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우 중립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분석을 받아들인다면, 소장으로서의 책임과 재판관으로서의 소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하시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구술자: 재판할 때야 소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판관으로서 다 평의하고 그런 것이니까 소장으로서 무슨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판결을 좌지우지해야겠다, 이런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대법원에서 우리가 재판할 때, 대법원장은 소수의견을 잘 내지를 않아.

면담자: 그래도 대법원처럼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힘을 실어 주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소장님이 그래도 다수의견에 많이...

구술자: 다 거의 다수의견일 거예요, 나도.

면담자: 하셨잖아요, 대법원처럼 그런 게 좀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구술자: 그런 것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면담자: 예. 그리고 국가배상법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를 대법원이 각하한 그런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하고 국회 날치기 권한쟁의 사건, 모두 중간에 소를 취하하고 이런 바람에, 심판절차가...

구술자: 종료되었다.

면담자: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견을 종료되었다고 의견을 내는데, 소 취하된 사건에서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본안 결정을 선고하는 게 옳다는 일부 학계, 그리고 또 소수의견,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술자: 그런 이론이 있을 수가 있지요. 일반 소송 사건에서는 소 취하하면 끝이지 뭐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선고하고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상상도 못 하지만은 현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자제해야지요. 아마 다수는 안 된다, 소 취하했으면 끝내자, 이런 쪽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강하게 선고하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이 논리를 정착을 시키고 따라오게 만들자, 소 취하를 했어도. 우리는 판결 선고해서 헌법적 가치를 표현하련다, 그런 점이 좀...

면담자: 그런데 선고는 안 한 대신, 소수의견의 입장을 거기다 결정문에 반영을 하는...

구술자: 이후에 잠깐 언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식으로 소수의견으로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판결이 없으니까.

면담자: 그다음에 제2차 선거구 인구편차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인구편차 기준을 3 대 1로 제시를 하고, 앞으로 2 대 1로 그 편차를 줄여야 된다고 선고를 하셨는데, 그에 앞서 1995년 12월 27일에 선고된 1차 선거구 인구편차 사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사정이 다르니까 따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2차 결정에서는 향후에 2 대 1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2014년이지요, 3차 결정에서 한 13년 만에 2 대 1로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인구편차사건에서 예전에 4 대 1 되었다가, 3 대 1, 2 대 1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구술자: 그것이야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정권은 다 똑같으니까 1 대 1이 맞지, 1 대 1이 맞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행정구역 가르기도 어렵고 인구 나누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편차를 좁혀가는 것이지요.

면담자: 3기 재판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1, 2기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기 재판부 헌법불합치 결정이 45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술자: 그것은 그런 사건이 많이 와서 그러지요. (웃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3기에 와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사건이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결정이 많이 나가지요.

면담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들한테 확대가 되면서 국민들이 그만큼 헌법에 대한 주장이라든가 그런 게 인식이 높아지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술자: 그렇지요.

면담자: 헌법불합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한정위헌할 것을 헌법불합치하게 되면 위헌성의 제거 책임을 입법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에 기본권 침해 받고 있는 당사자를 바로 구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구술자: 그러니까 당장 위헌을 선고하면 혼란이 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 질서 파괴가 오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어서, 그게 온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이런 거.

면담자: 3기 재판부에서 병역법 88조 1항 1호 위헌제청 사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거를 합헌으로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 입법적 보안을 요구하는 취지의 선고를 하셨는데, 당시 재판관님들이라든가 소장님의 의도, 취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작년 6월에 4차 결정 같은데요, 거기에는 그 전의 선례를, 두 번, 세 번이죠. 세 번의 선례를 사실상 뒤집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헌법적 판단들, 이렇게 쪽 이어져 온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좀...

구술자: 병역법에 대해서는 2기 재판부에서도 합헌이라고 그랬고, 우리 3기 재판부에서도 합헌이라고 그랬고, 4기 재판부에서도 합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의 국방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하고, 그 전의 엄혹했다고 그럴까, 그런 시대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의식이 강한 때하고 지금 무슨 종교의 자유를 찾고 개인의 기본권을 더 중시하는 쪽에서 좀 달라지겠지요.

면담자: 그다음에 또 3기 재판부가 했던 엄청난 사건 중의 하나가 대통령 노무현 탄핵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소수의견이 공개되지를 않았는데요, 그 문제를 두고 재판관 사이에 굉장한 격론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와 관련해서 3기 재판부 시절에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 그 부분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36조 3항에 대한 문제, 그 당시의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까?

구술자: 하... 그것이 말이지요, 굉장한 격론이 벌어졌었어요.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소수의견을 공개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현재 판결에는 전부 다 소수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헌법재판소법 34조에는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6조인가 가면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 세 개에 대해서는 결정서에 재판관들은 의견을 표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상 위헌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판결문(결정문)에, 그밖에 탄핵하고 정당 해산 그거는 없잖아, 의견 표시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었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격론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이 조문은 반대 의견을 표시 못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딱 났어요.

면담자: 기자들이 취재해서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거명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인은 안 하니까.

구술자: 아... 그 몰라요. 기자들이.

면담자: 시인하는 걸로 다 해 가지고.

구술자: 기자들이 어떻게 파헤치지 않고 배기겠소? 다 파헤치지.

면담자: 그래서 그게 2005년 7월 29일부로 개정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입법한 게 아닙니까.

구술자: 아니에요.

면담자: 제안한 게 아니고?

구술자: 우리는 이 현행법이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으니까 함부로 개정하지 마라, 다 심사숙고해라,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국회에서 그냥 금방 해 버리더라고.

면담자: 국회에서, 예. 그다음에 또 굉장히 큰 사건이고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신행정 수도헌법소원사건, 이건 관습헌법을 인정해서 헌법 130조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요. 관습헌법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것 인지?

구술자: 그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헌법 교과서에 다 나와.

면담자: 아 관습헌법이?

구술자: 그럼 다 있는데 뭘.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 낸 말이 아니고, 헌법 교과서에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국토 균형 발전이야.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해야지 도시는 인구가 팽창하고 산업이 발전되는데 농촌은 피폐하고 못 산다는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 거기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못 보던 얘기라고...

면담자: 그 당시에 평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관습헌법 놓고 양론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구술자: 갈렸지요. 반대의견은 여재판관 전효숙씨 혼자 관습헌법 반대하고 수도 이전 옳다는 반대의견을 썼고, 나머지는 다 위헌이야. 나머지는 위헌인데 그중의 한 분이 의견을 달리했어, 이유를 달리 해가지고 위헌을 했어. 그렇게 나는 기억이 나요.

5.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면담자: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마쳤을 때, 그때의 소감을 듣고 싶은데요, 헌법재판관 시절을 돌아볼 때 보람이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구술자: 나는 지금까지 법조인으로서의 생활만 땀아 왔거든요. 물론 재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재조지만. 근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장 영광되고 보람 있었다는 것은 현재야. 뭐 벼슬이 높아서가 아니고, “소장 했으니까 그러지”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취급했던 사건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 6년 동안이 내 법조 인생의 하이라이트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이 그렇게 중요했고, 보람도 있었고, 좋았어요. 지내기도 좋았고.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다 화기애애하게 그렇다고 자기 주장을 쉽게 양보해 버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좋고. 그리고 또 사건을 떠나서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지냈어요. 정말로 우리 3기는 잘 지냈어요.

면담자: 네. 그래서 헌법재판이라는 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고, 국민들이 활용도 많이 하는 그런 제도가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일반 재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 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이 두 개를 병렬적으로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행된 지 30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 제도의 장단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위상 이런 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지 소장님이 양쪽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았습니까?

구술자: 그것은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역할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있으니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면담자: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이라든가 헌법재판제도에서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점, 또 미래의 헌법재판관에게 하실 당부의 말씀 이런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구술자: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겠소? 다 잘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좌우간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하고, 우리 헌법체제 확립하는 거니까, 그 이상의 최고 규범은 없잖아요? 그래서 헌법질서 확립, 기본권 보장,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법률 전공하는 사람한테 탁 때리면 움찔하면서 “권리와 의무” (웃음) 입에 (붙어서) “권리와 의무” 그런 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는 탁 때리면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확립” 이거야. 현재 사람들.

면담자: 어떻게 보면 3기 재판부 들어와서 아주 폭발적으로 국민들한테도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술자: 그것은 사건들이 그 당시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느 재판부가 왔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로 냈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 3기 재판부만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그런 결론을 냈는데, 그게 우리한테 왔다 그런 얘기지요.

면담자: 혹시 제가 여쭙보지 않았던 부분이나 아니면 또 미진했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구술자: 아니요, 다 끄집어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

면담자: 귀중한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술자: 끝났습니까?

면담자: 이걸로 윤영철 소장님에 대한 구술을 마치겠습니다.

구술자: 수고하셨습니다.